



농림축산식품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(3) 알림

1. 관련 :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, [별표 2의4]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,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-10589('21.11.17.)호 및 -9371('21.10.05.), -9538('21.10.13.)호
2. 우리 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'20/'21년 동절기 및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서 지속 확인되는 미흡사항을 보완하고자, 아래(붙임)과 같이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하였습니다.
3. 관계기관과 지자체, 관련 단체 등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가금농장에서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집중 지도·홍보*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검역본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를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문자 발송, 지자체는 가금농장 전담관을 통해 가금농장에 육성 등으로 전달, 단체·농협 등은 계열화사업자, 소속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 홍보 실시

- 아 래 -

□ 주요 내용(추가된 방역기준, 세부 내용 붙임 참조)

○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

- 가금의 소유자 등은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 운반, 동물의약품운반, 난좌운반, 가축사체운반, 진료·예방접종, 기계수리, 가금 출하·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, 가축사육시설 운영·관리차량, 택배운송차량, 우편전용차량, 농장 종사자(농장주·관리자 등 포함)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(담장)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

* 다만,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, 소방차량,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

